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2월 1일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6년 12월 7일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

나.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 기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신설하여, 효율적 조직구조 개선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발전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분장사무 신설

가. 건설도시국 분장사무 신설 :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 신설

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분장사무 신설 :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

• 강동문화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

○ 별표 개정

가. 별표1 : 선산보건소 관할 일부 보건진료소 위치변경에 따른 내용수정

나. 별표2 :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도로명주소 수정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신 정 순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도시재생업무와 강동문화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업무를 신설하여 신규 행정수요 중심으로 시정의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며,
- 보건진료소 및 노인종합복지관 주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